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 제도와 사례연구

성연옥*, 배성필**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순천향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강사**

A Study on the Legal Systems and Case Studies of Cooperatives in Italian

Yeon Ok Seong*, Sung-Pil Bae**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on Chun Hyang University**

요 약 협동조합은 19세기에 처음 영국에서 조직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유럽과 북미, 20세기 중반부터는 나머지 나라들로 확산된 뿌리 깊은 조직체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에서 분리되었으며, 초기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활동해 왔으나, 이탈리아 사회주의와 19세기 말 가톨릭 교회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 다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는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찰한다. 둘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과 특성 그리고 법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나타냈다. 첫째, 마을기업은 대표 및 직원의 애착심, 성실성과 같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조직구성원 모두가 마을기업의 비전에 공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조직의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마을기업이 더욱 높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어야 한다. 넷째, 사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수립 시 필요한 요소 및 성공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며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이윤추구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공헌에 기여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 이탈리아, 협동조합, 법, 제도, 사례

Abstract Co-operatives are a deep-rooted organization that was first organized in Britain in the 19th century and spread to Europe and North America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from the mid-20th century. Cooperative in Italy are fraternal (friendly societies) separated from religion, and in the early days of socialism and the late 19th century Catholic Italy, but independent of activity. And the Church's social participation, as well as multiple personal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laws and institutions of Italian cooperatives. And let's look at how the laws and systems of Italian co-operatives support society and the national economy. Specifically, firstly, based on prior research, the concept of co-operatives and the cooperative movement and social values are considered. Second, review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Italian co-operatives and the legal system. Thir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ase of Italian co-operatives. Fourth, suggest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the attitude such as attachment and sincerity of representatives and staff of village enterprises is very important. Second,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ould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with empathy and attachment to the vision of the village enterprise. Third, it should be highly likely that village enterprises, which can draw capital from outside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organization, will generate higher economic results. Four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odel of mind enterprise by presenting factors and success factors in establishing a village enterprise based on cases and theories. In conclusion, Co-operatives should contribute to social contribution rather than economic profit-seeking.

Key Words : Italian, a Co-operative Society, Legal Systems, Case Study

Received 24 June 2020, Revised 06 July 2020

Accepted 17 July 2020

Corresponding Author: Sung-Pil Bae
(Soon chun hyang University)

Email: angdre100@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협동조합은 19세기에 처음 영국에서 조직되어 1900년도 초반에는 유럽과 북미에 중반부터는 나머지 나라들로 확산된 뿌리 깊은 조직체이다(이금노, 2012)[1]. 그리고 생산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농산물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스포츠협동조합, 금융 및 보험협동조합, 지역개발협동조합, 언론협동조합, 전기·통신협동조합, 창투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참여계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원빈, 2012)[2].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협동조합들과 그 브랜드로는 ‘FC 바로셀로나’, ‘AP 통신’, ‘선키스트’, ‘제스프리’ 등이 있다(이원빈, 2012)[2].

현재 전 세계 협동조합의 규모는 10억 명 규모의 조합원이 이곳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발간되는 ‘글로벌 300리스트’자료에 의하면 현재 협동조합의 순수한 가치는 1.6조 달러로써 협동조합이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원빈, 2012)[2]. 또한, 제9회 아시아태평양 협동조합 각료회의를 통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폴리그린 회장이 특별연설을 통해 강조한 바도 있다.

유럽국가들 중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에서 분리되었으며 초기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활동해 왔으나 이탈리아 사회주의와 19세기 말 가톨릭교회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 다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정숙희, 2018)[3]. 이들의 다양한 이념들은 매우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제안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념의 긴밀한 공유를 기반으로 조직화하고 상급단체 및 수평적(지역), 수직적(산업) 성격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이들은 전국 단위의 협력 조직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대표성이 단일화하고 있으며, 폭넓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 주요 의제들(평생교육, 직종 견습제 등)에 관한 정책 합의를 위한 공조 및 산업 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854년부터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7년에 이탈리아 헌법 ‘제45조’에 협동조합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고 국가가 협동조합을 보호할 의무와 그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였다(한국지방행

정연구원, 2012)[5].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과 지원제도는 하위법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00여년이 앞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발전과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위해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운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찰을 할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특성 그리고 법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탈리아 협동조합들의 사례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협동조합들에게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의 정의는 각 국가별로 정치·경제·사회적인 태생환경에 따라서 제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ICA)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채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출자의 방식으로 소속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며 조합을 소유하면서 조합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생산·판매·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이 소유자이자 사용자가 되는 자율적인 결성단체인 것이다(이금노, 2012)[1].

또한 북미 지역의 신세대협동조합 등과 같이 자본금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변형된 협동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협동조합은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1단체) 1표의 의결권을 갖고 민주주의적으로 평등하게 운영되는 단체이다. 협동조합은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와는 달리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에 따른 호혜성을 우선시 하며, 고용침체, 양극화와 고령

화에 따른 소외계층과 개발우선주의에 의한 지역공동화, 슬럼화, 삶의 질 저하 등 어메니티를 저해하는 취약요소에 대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활기 넘치는 지역의 재생을 위해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원빈, 2012)[2].

2010년 'Co-operatives UK'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 목표는 조합원들이 협동적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협동조합은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동등한 의견결정을 가지고 평등한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가치를 창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o-operatives UK, 2010)[6].

2.2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가치

현대사회는 개발중심의 이익추구와 이익에 대한 독점성으로 사회 배분과 투자가 원활하지 못하여 실업자, 비정규직, 경기침체, 빈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과 날로 증가하는 범죄 등의 사회현상을 보이면서 어메니티가 저하되고 사회안전망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협동조합의 사업영역으로는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5]. 그리고 ICA에서 정하는 7원칙 중 3개 원칙인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제5원칙), 협동조합 간 협력(제6원칙),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제7원칙)을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심태섭, 2012)[7]. 이들은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협동조합의 향후 활동범위는 생산·서비스·교육·문화·의료·보건·지역재생·관광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활동이 예상된다(이금노, 2012)[1].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주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물가인상, 고용불안, 경기침체 등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 협동조합은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 예로, 스위스의 '미그로(Migros)'와 '코프 스위스(Coop Swiss)' 소비자 협동조합은 식품시장의 42.7%를

점유하고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업체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8만 4천명의 직원이 일하면서 연간 10조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황영모, 2012)[7]. 그리고 코프 스위스는 5만 명의 직원이 연간 3천8백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2008년에는 다국적 유통기업인 '까르프'의 12개 매장을 모두 인수하였다(황영모, 2012)[8].

스페인인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이탈리아 에밀리아주의 로마냐 협동조합은 GRDP의 30% 수준을 차지하며 고용의 유지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유홍규, 2013)[19]. 그리고 이탈리아 에밀리아주의 볼로냐 지역(인구 430만명)은 8천여 개의 협동조합과 40만개의 중소기업이 이 지역 총생산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볼로냐시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제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있다(황영모, 2012)[8].

또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는데, 독일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 부문 협동조합 기업이 250여개社가 창업되었고, 캐나다에서는 10년 이상 존속하는 영리기업이 20%인 반면, 협동조합의 존속 비율은 40%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소매금융의 60%, 농식품의 40%, 소매시장의 25%를 협동조합 경제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은 1억 명의 일자리를 유지(다국적 기업 채용수준의 120%)하고 있다(황영모, 2012)[8].

북미국가 중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민간단체와 주정부가 지역개발과 마을 공동화, 주민편의시설 폐쇄문제, 보육활동의 사회화 문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문제, 노인의 홈케어 서비스 문제 등 지역사회의 5대 이슈를 논의해 오고 있으며, 1996년에는 기업·협동조합·지방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 및 사회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1997년에는 이를 반영하여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이원빈, 2012)[2]. 이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에 힘입어 2007년에 327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으며, 농림수산업·제조 및 건설업·유통·운송·교육·레저·문화·의료·사회서비스·컨설팅 등에 걸쳐 활동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었다(황영모, 2012)[8].

2.3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 제도

2.3.1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특성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의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진 헌법의 내용은 ‘공화국은 사적인 이윤 목적이 없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인정하며, 법이 정한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법률의 특별한 통제로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Zamagni, 2013)[9]. 1970년대 후반부터 공공부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1991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다(최용주, 2009)[10].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현재의 모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첫째, 이탈리아 헌법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개념이라도 사회적 기능에 부합된다면 승인을 했다. 이것은 초창기의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자들 상호간의 폭넓은 공계 원리를 적용하여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에 대한 이익활동을 금지했다. 이런 사항은 “광범위한 상호작용(extendedmutuality)”이라는 용어으로써 사용되었다.

둘째,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충족되는 자본은 현저히 적으며 일반단체를 설립하는 요구사항보다는 높지 않은 편이다. 나아가 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책임이 제한되었고 법적 인격과 분리되어 민주적으로 그들의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도록 요구되어 1인 1표 원칙에 따라 이론적으로 민간단체보다 민주적인 형태가 형성되었다(Carlo Borzaga et al., 2009)[11].

사회적 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이 크게 확산되었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위탁도 증가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김정원, 2009)[12].

한편,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조합의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컨소시엄을 시도했다(장영란, 2012)[13].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규모는 40~50명이고, 25명 정도가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장영란, 2012)[13]. 수백 명 규모의 조합은 몇 개 되지 않지만 지역 컨소시엄은 마케팅 개발, 행정적 상담, 인적 자원의 교육 개발, 시설 조합과 파트너들에 대한 조직적·경영적

지원을 통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지역 협동조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 컨소시엄은 연구 활동, 지역 컨소시엄의 경영자와 교육담당자들에 대한 훈련과 상담, 개발기획 등 장기적인 전략적 기능 수행을 함께 진행하며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이성수, 2000)[14].

또한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 보건교육 서비스로 건강 영역에서의 활동을 실행하는 “A 유형”과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는 목적을 둔 “B 유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하고 있다(김민석, 2013)[15].

두 유형 간에는 엄격한 구분을 두고 있으며,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두 유형의 목적이 다른 데다 ‘B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자가 사회서비스 ‘A 유형’을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큰 원인으로 보고된다(김강식, 2010)[16].

‘B 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워야 하는데, 여기서 취약계층은 장애인, 약물중독자, 알콜중독자, 문체가정의 약자, 집행유예(보호 관찰 probation)중인 죄수들을 지칭한다(장영란, 2012)[13].

2.3.2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 제도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에서 분리되었고, 초기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활동해 왔으나,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와 19세기 말 가톨릭교회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 다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의 이념들은 매우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제안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념의 긴밀한 공유를 기반으로 조직화하고 상급단체 및 수평적(지역), 수직적(산업) 성격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이들은 전국 단위의 협력 조직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대표성이 단일화하고 폭넓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 주요 의제들(평생교육, 직종 견습제도 등)에 관한 정책적 합의를 위한 공조 등을 산업 간 노사정을 통해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854년부터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7년 「헌법」 제45조에 협동조합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가가 협동조합을 보

호하고 그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5].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과 지원제도는 하위법이 담당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에 따라 총연맹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를 이룩하며 발달하였다(김정현, 2013)[17]. 1991년 「Law 381」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재정형성과 관련한 방법론을 마련하였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4]. 「Law 381/91」에 의하면 앞서 제시한 'A 타입'과 'B 타입'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A 타입'은 생산적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될 수 있지만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B 타입'은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 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소속 직원의 최소 취약계층이 30%의 근로자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Law 381/92」는 사회적 협동조합 내 조합원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근로자회원은 “금전적 형태나 숙식 제공 등의 형태로 보상받는 참여자와 관리자”로 정의하고 사용자 회원은 “사용자로서 협동조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혜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회원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자발적 또는 개인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멤버로 전체직원수의 50% 초과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였다. 후원회원의 경우는 “조직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자본기여자”로 정의하였으며, 법인회원은 “협동조합 활동의 자금을 제공, 조직의 발전을 지원하는 규정을 가진 공공 또는 민간법인”등으로 하였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4]. 또한, 2005년 5월 말 이탈리아 의회는 사회적 기업을 조직형태로 인정하는 최초의 법률을 승인하였다.

이탈리아 협동조합법 제정의 특징은 첫째, 협동조합 연합회가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융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는데 이는 「59/1992 법률」 제11조에 따라 단위 협동조합 수익의 3%를 적립하여 협동조합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김정현, 2013)[17].

둘째, 199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 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수혜 대상자의 생활능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복지모델로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김정현, 2013)[17]. 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1947년 「바세비(Basevi)법」에서부터 법률에 적용되었으나 조합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서 조합원의 지위는 판례에 기반을 둔 법해석에 의해 해석되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김정현, 2013)[17].

초기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이 갖는 인적결합에 의한 결사체적 성격을 우선적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정관이나 내부규칙을 적용해 왔으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여 노동법 및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1990년대에 들어서 법해석은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142/2001법」은 노동자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기업계약과 근로계약이라는 계약관계의 이중성이 허용되었다. 이는 계약의 자유라는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임노동기반의 근로계약 체제의 선택을 법률로 허용함으로써 노동법 및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정숙희, 2018)[3].

반면 결사체로서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서 2003년 「30/2003법」 제9조를 통해 「142/2001법」을 일부 개정하여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결사체 계약의 우위에서 종속적 임금근로자 형태의 근로계약을 도구적으로 수용함을 명시하였다(정숙희, 2018)[3].

현재, 이탈리아의 조합원은 이중적 지위자로서 조합원 처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은 산별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과업도 가능하게 되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4]. 이러한 법률에 힘입어 2011년 협동조합 연맹들이 협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한 ACI(Alleanza Cooperative Italiane)를 설립하였고 가입 단체들은 각자의 산별 수준에서 양자 간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에 참여하며, 노동조합 및 기타 사용자 단체들의 주요 교섭대상자로서 활동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한편, 이탈리아의 노사관계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입법공백 상태(공공부문 제외)에서 발달하여 왔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약 33%로서 중상위 수준이다(정숙희, 2018)[3]. 협동조합의 노조 조직률 또한 대체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협동조합

들의 비중이 높은 지방(Emilia Romagna, Toscana)에서 역사적으로 노동운동과 연결된 정치 문화가 발달되어 높은 조직률을 나타내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따라서 이탈리아는 스페인,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상급단체들은 대표적 사용자 단체들과 동일한 지위의 사회적 파트너로서 노사정 및 노사간 사회적 대화와 전국의 기업 또는 지역 단위의 단체교섭에 참여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또한 근로자 15인 이상의 기업(2013년 15인 이하로 확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통합대표제와 근로자대변체계를 통해서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혼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이처럼 협동조합들의 참여적 노사관계는 매우 탄탄하게 확립되어 있고, 일련의 명백한 협약 규정들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협동조합의 실제 수요에 더 적합한 노사관계를 수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3개의 주요 협동조합의 연합을 통한 대표성 및 협약 규칙과 관련하여 총연맹 단위의 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이 협약은 1990년 4월 5일 체결된 ‘협동조합 노사관계 보충협약(Protocol on Industrial Relations in the System of Cooperative Companies)’에 포함된 내용들을 포함함으로써 협약당사자들을 협동조합 체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체들로 상호 인정하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하지만 위장 협동조합(Spurious Co-operation), 협약 덤핑(contractual dumping) 등의 문제로 협동조합에 관련한 지역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 감독을 통해 부당행위를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적법성의 문화조성과 진정한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단계에서 입찰 가이드라인으로 입안하는 등 사전대책이 시행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4].

2.4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연구

2.4.1 볼로냐의 CADIAI(사회적협동조합)

카디아이(CADIAI)는 볼로냐의 모범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보육’ ‘협동조합’이라는 이탈리아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딴 조합 명에서 알

수 있듯이 취약자의 고용과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카디아이는 1984년,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노동자들이 출자해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가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제정된 뒤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됐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직원 1,246명 중 조합원이 708명에 이르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포함해 한해 2만7400여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겨레뉴스, 2011)[18].

카디아이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카라박’이라는 컨소시엄이며, 카디아이(CADIAI)와 급식노동자협동조합인 캄스트(CAMST), 건축 노동자협동조합인 치페아(CIPEA) 이렇게 협동조합 3곳이 힘을 합쳐 보육시설을 세워 운영한다(한겨레뉴스, 2011)[18]. 이들의 운영영역은 전문적인 건축 기술과 경험이 많은 치페아(CIPEA)가 보육시설을 짓고, 카디아이(CADIAI)는 운영을 맡았으며 급식시스템의 노하우와 인력 및 설비를 갖고 있는 캄스트(CAMST)는 급식을 제공하는 독특한 컨소시엄구성으로 매우 효율적인 것이다(한겨레뉴스, 2011)[18].

볼로냐 시내의 ‘카라박’ 보육시설은 자연채광과 태양열 발전, 친환경 기저귀 사용 등 친환경적인 시설과 설비전문 인력에 의한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볼로냐시 10곳에서 카라박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한겨레뉴스, 2011)[18].

두 번째,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의 부지를 공급하고 20~30년의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보육비를 지원한다. 대신 지원기간이 끝나면 보육시설의 소유권은 시로 넘어온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간의 협동으로 건립하고, 운영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지방정부는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공공성격의 보육시설을 세울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유홍규, 2013)[19].

카라박 보육시설 설립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발휘하기에 좋은 프로젝트였다. 교육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주로 해온 노동자협동조합 카디아이(CADIAI)에서는 유치원교사와 직원을 파견하고, 급식은 학교급식 경험이 많은 급식협동조합 캄스트(CAMST)가 담당하기에 적합했기에 이들의 운영방식은 ICA(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강조하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원칙을 충실히 이행한

사례라 볼 수 있다(차형석, 2011). 여기에 고용적인 측면으로 카디아(CADIA)의 교사들과 캄스트(CAMST)의 급식인력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았으며, 지역적 측면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큰 의미로 작용했다(정원각, 2011)[20]. 그러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시설물의 신축과 지역의 물리적 개발, 사업의 기능적 운영 등과 같은 경우, 많은 자본과 인력, 노하우(know-how)를 요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별조합이 이와 같은 능력을 보유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효율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원빈, 2012)[2].

2.4.2 코프 라스트라다(Coop Lastrada)

1998년에 집 없는 사람들이 자력갱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현재 조합원이 약 50명 정도로 공중화장실과 공원청소를 맡아 일을 하거나 노숙자들의 쉼터를 관리하고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이원빈, 2012)[2].

노숙인 자활협동조합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출자금을 내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년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이원빈, 2012)[2]. 이들은 교육과정에서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는다. 훈련기간 동안 알코올, 마약중독 치료를 비롯해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과 정기적인 의료진의 진료도 받으면서 자전거 수리나 채봉과 같은 기능훈련도 받게 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5]. 하지만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사람은 50% 정도이다. 또한, 사회진출 후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훈련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숙인이 참가하는 쉼터는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득한 후 쉼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며 모든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이 쉼터는 시에 4개소의 협동조합을 관리하며 조합의 관리자들이 노숙인들과 상담하고 필요한 교육도 진행하며 관리한다.

그리고 볼로냐 시는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시설 관리와 노숙자 지원을 이러한 협동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김정래, 2011)[21].

‘코프 라스트라다’는 노숙인 스스로가 자력갱생을 위

해 자발적으로 설립했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낙오자 집단에 커다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합의 자발적인 설립과 전문 인력의 상담·치료 및 직업훈련, 그리고 공공의 사업지원 등 참여자 간의 유기적 협력은 노숙인의 갱생과 자활을 돕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이원빈, 2012)[2].

2.4.3 라 바라카(La Barraca) 극장

이탈리아는 70여개의 장르별, 직군별 문화예술 협동조합이 있으며, 각 협동조합은 연합회 격인 Mediacoop(문화와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이탈리아에는 공립극장이 17개, 사설극장이 52개, 그 중 협동조합 형태의 극장은 25개이며 이들 협동조합극장은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이원빈, 2012)[2].

극장과 행정기관은 조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조약은 프로그램의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제작 및 예술적 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장소제공을 위해 협동조합극장 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다년간 극장 지속기간을 보장하고 공유지에 대한 무료사용 허가와 극장운영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극장운영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원빈, 2012)[2].

1979년에 설립된 라 바라카(La Barraca)극장은 협동조합극장이며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연극과 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이 극장의 신념은 인간적 삶을 기반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예술적 의미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극장은 1980년 까지 전국 투어공연을 통한 연극제작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그 이후 지역의 요구를 받아 드림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어린이 연극센터를 개설하게 되었고 극장의 운영방식은 철저하게 청소년과 아동에게 맞춰 설계했다(이원빈, 2012)[2].

라 바라카(La Barraca)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극장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위하여 기획자들은 대중과 연극인, 전문가, 조합원들을 네트워크하기 위해 바(bar)를 운영하며 연극공연만을 위한 모임뿐 아니라 예술적 직무와 기술적 직무 그리고 교육적

직무와 조직적 직무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김경인, 2016)[22]. 이러한 라 바라카의 다기능적 특성은 참여자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예술적 영역 내에서 운송, 무대장치, 조명 기술, 프로모션 기획, 극작가, 연출자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김경인, 2016)[22].

두 번째, 라 바라카는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실행하여 보다 많은 유럽국가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극을 통한 예술적 체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함으로써 유럽지역으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이원빈, 2012)[2].

라 바라카는 2010년 2월 비영리사회조직단체인 사회적 협동조합 단체가 되었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그래서 볼로냐 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33개의 극장이 시즌별로 계획하여 어린이·청소년·성인을 포함 한 12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이원빈, 2012)[2]. 이러한 성과 뒤에는 이탈리아의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다. 때문에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권리를 18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보면 ①모든 예술적 형태에 접근할 권리 : 연극, 음악, 댄스, 문학, 시, 영화, 시각예술 및 멀티미디어 등을 말한다. ②‘기본적 지식’으로써 예술 언어들을 접할 권리 ③아동·청소년의 감정적인 지성을 양육하며, 조화로운 섬세함을 개발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예술적인 과정에 속할 권리 ④예술, 신체적 발달, 관념, 인습의 관계를 통한 자기 발전할 권리 ⑤다양한 연령대의 전문가들에 의한 적절하게 창출된 고품질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권리 ⑥‘소비자’로 취급(구분)되어 지지는 않았으나, 자격을 갖춘 ‘대상’으로부터 예술과 문화의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이원빈, 2012)[2]. ⑦지역이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기 위해 가족, 학교와 함께 시립문화단체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 ⑧미취학 기간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예술 및 문화적인 이벤트에 산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참여할 권리 ⑨예술적인 체험의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공유할 권리 ⑩지속적인 침투가 활기찬 문화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교와 예술 및 문화기관과의 통합된 시스템을 소유할 권리 ⑪박물관, 극장, 도서관, 영화관 및 기타의 문화 공연장에 교우들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권리 ⑫그들의 지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필요한 중재자로서 그들의 선생님과 함께 예술 및 문화적 경험을 할 권리가 있다(이원빈, 2012)[2]. ⑬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이해할 권리 ⑭이주를 했을 경우에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예술 및 문화유산에 대해 이해하고 공유할 권리 ⑮서로 다른 능력을 고려하여 이뤄진 문화예술적 프로젝트에 참여할 권리 ⑯다른 연령대를 고려하여 기획되고 건축된 장소에 들어갈 권리 ⑰대중문화의 이해를 위한 전문학교에 통학할 권리 ⑱사회적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시에서 주최하는 예술과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이원빈, 2012)[2].

2.4.4 레가 코프 볼로냐(Lega Coop Bologna)

이탈리아에는 총 4개의 협동조합연합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가 코프 볼로냐’는 볼로냐 지역의 협동조합 지역협회로서 규모나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레가 코프’는 볼로냐 협동조합의 대표기구로서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협력을 돕고 지자체를 상대로 협동조합을 대변하며, 단위협동조합들이 실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인 세무·회계·인사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각 단위조합 운영의 감사역할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경제·건축과 도시계획·공공서비스·국제적 연대·수송과 물류분야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이원빈, 2012)[2].

소속된 협동조합으로는 소비자협동조합, 고용·생산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운송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복합협동조합(신용·보험·문화·여행·스포츠·여가관리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다(김정래, 2011)[21].

‘레가 코프 볼로냐’는 태동 초기에 협동조합이 유익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주로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하였다(이원빈, 2012)[2]. 그리고 ‘레가 코프 볼로냐’는 혼합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 분야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추진전략을 정리하면 첫째, 중소기업과의 제휴전략과 유럽 협동조합과의 전략적 제휴를 실시하여 보험영역, 소비자영역, 건설영역으로 구분하고 유럽의 사업연합체를 조직하였다. 둘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와 국가 관리의 위기 측면에서 특히 보건·의료·수송·환경 및 건설 분야에서 협동조합활동의 기회가 증대될 것을 사전에 판단하여 이들

분야에서 공공사업계약을 얻는데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도록 하였다(이원빈, 2012)[2]. 이를 위해 ‘레가 코프 볼로냐’는 기업들의 병합에 의한 규모의 협동조합을 형성하는데 지원하였다.

‘레가 코프 볼로냐’의 기본 좌우명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목적’에 대한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 가맹단체의 발전과 기업적 상호제휴에 대한 추진이다. 둘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이 번창하기 위해 그 사명과 원칙에 충실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전국 조직들과 외국조직들과의 관계추진 시킨다. 다섯째, 협동조합 내 가맹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며 법에서 정해진 모든 기능들을 행사 한다. 여섯째, 경제발전에 대한 협동조합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요구 일곱 번째, 협동조합의 연구와 조사 및 교육활동 여덟 번째, 개발도상국으로 협동조합의 전파 아홉 번째, 가입단체 간의 분쟁조정 등이다(권영근, 2011)[23].

그리고 ‘레가 코프 볼로냐’는 협동조합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고, 기금의 조성방법은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하거나 협동조합과 사업연합의 이익에서 3%를 거출하여 형성하는데 거출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5]. 그 결과, 1994년에는 협동조합 발전기금의 활동이 개시되어 242명의 고용이 실현되었고 1995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세조치가 실행되어 ‘레가 코프 협동조합’ 발전기금은 24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였고 1,064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김정래, 2011)[21].

1995년 ‘레가 코프’는 가치현장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설립이념과 취지에 부합된 조합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조합구성원들은 모든 근본에서 핵심임과 동시에 우선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② 협동조합의 조합구성원들은 사회적 공동체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넘겨줄 이익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협동조합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조합원들의 참여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그 공로를 인정한다. ④개별 조합원들의 실질적 참여가 협동조합이 가진 가장 주요한 자원이다. ⑤모든 협동조합은 전문성을 가지고 조합의 활동 가치

를 강화·육성하고 창의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능력을 강화해야 한다(Lega Coop Bologna, 1995). ⑥협동조합 내 핵심인재들은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존경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⑦모든 협동조합 일꾼들에게 정직·정의·책임감이 요구된다. ⑧협동조합은 투명성·정직성·정당성을 스스로 개발해 내어 그 가치의 수준에 따라 근본적 진가를 드러내야 한다. ⑨협동조합은 다원적 공존을 자산으로써 인식한다. ⑩협동조합은 다른 경제적 사회적 주체와 그들의 의견과 문화를 인정하면서, 고유의 독창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제안활동을 추진해야 한다(Lega Coop Bologna, 1995). ⑪협동조합의 법률은 협동의 원칙에 기반하여 원칙을 두어야 한다. ⑫개별적인 상호관계는 필히 경제적 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⑬협동활동에서 시장이란 경제적 부의 창출과 건강한 환경에 기반을 두며, 이를 존경을 위한 곳으로써 사회적 경제추진을 수행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⑭시장에서 협동의 기능은 법률에 따를 뿐 아니라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정당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Lega Coop Bologna, 1995). ⑮협동 활동은 조합의 지속적 육성을 창출하면서 각 업체들의 필요요구에 따라 기존의 사업체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새로운 미래 사업체의 개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⑯협동 활동의 원칙은 민주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내부 관계를 감독한다. ⑰협동조합 조직은 협동조합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 고유의 원칙은 경제적 창출과 이를 위한 운영방침의 적합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관계를 촉진시킨다. ⑱ICA에서는 협동조합의 상호 관계 지향적 도움행동은 단순히 경제적 부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에 대한 규정차원으로 인식한다. ⑳협동 활동은 그것이 속해 있는 경제체계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스스로 시장에서 성장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적·도덕적·공익적 상태를 증진시키는 목적에 부합한다(Co-operatives UK, 2010)[6]. 이처럼 ‘레가 코프 볼로냐’의 특징은 볼로냐 지역 협동조합의 대표기구로서 협동조합간의 협력과 연대를 돕고, 지자체를 상대로 협동조합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3. 결론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조합 운동과 함께 근로자, 농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상호부조의 공동체를 결성하여 사회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되어 왔다(정숙희, 2018)[3]. 예를 들어,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조 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전제로 노동력이 생계수단인 임금근로자를 적용범위로 하는 노동법을 탄생시켰고,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과 노동의 일체관계를 기반으로 기존 법률에 포섭하거나 협동조합법제로 안착되었다(정숙희, 2018)[3].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사상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 협동조합·노동자(생산)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신용 협동조합 등으로 발달해 왔다(정숙희, 2018)[3].

협동조합은 사회 통합적 기제로서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는데 특히 국제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은 자본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정숙희, 2018)[3]. 이탈리아는 조합원근로자의 노무 출자를 임노동계약으로 보아 근로자로서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을 적용하는 법제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자영업자로 판단하면서도 별도의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노동자협동조합의 대표기구인 CICOPA는 '협동적 근로자 소유'를 선언하였으며, ILO나 ICA와 함께 조합원근로자와 협동조합 관계를 임노동관계로 보며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정숙희, 201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국내 협동조합에게 핵심적인 목표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은 협동과 협력을 비롯한 기본 원칙의 충실한 이행해야 하며 조합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끊임 없는 혁신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에 고용되고 생산성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협동조합을 출자한 출자자이면서 노동 생산성을 제공하는 구성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어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셋째, 협동조합 조합원근로자에 대한 노조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형식상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원근로자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자본과 노동의 일체성이 강한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 실현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와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 하며, 그 특성상 다양한 복지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문헌을 바탕으로 한 질적연구로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을 사례로 태동배경과 제도를 확인하였고 또한,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협동조합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이탈리아 전체의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으며, 후속연구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영체계와 한국의 협동조합 운영체계에 대해서 비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제도적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발굴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기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 발전시키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의 성공방식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목적에 치우친 협동조합을 지향하기보다는 사회구성원과 소통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에 역량을 두는 그래서 사회공동체가 화합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이금노(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 [2] 이원빈(2012), 문화예술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정숙희(2018), 직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한국노동연구원(2014),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국제노동브리프, Marina Monaco(유럽노동조합연맹(ETUC) 프로젝트관리자) Gianluca Pastorelli(사회적 경제를 위한 유럽연구소(DIESIS)소장), 2014. 8월호.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6] Co-operatives UK(2010), The UK co-operative economy: A review of co-operative enterprise.

[7] 심태섭(2012),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정비방안, 기획재정부.

[8] 황영모(2012),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준비와 실천, Issue Briefing, 74, 전북발전연구원.

[9] Zamagni, Stefano and Zamagni, Vera(2013),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송성호 역), 북돋움.

[10] 최용주(2009), 사회적 경제의 도래와 협동조합운동: 유럽과 캐나다의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농협경제연구소, 한국협동조합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11] Carlo Borzaga, Jacques Defourny 엮음, 박대석, 박상하, 고두갑 옮김(2009), 「사회적 기업」, 시그마프레스, pp.198-199.

[12] 김정원, 「사회기업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아르케, 2009.

[13] 장영관(2012), 社會的企業의 成果 및 持續可能性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研究, 경원대학교 대학원.

[14] 이성수(2000), 사회적 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 연구소 부설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15] 김민석(2013), 사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16] 김강식(2010),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17] 김정현(2013), 이탈리아헌법과 협동조합법제 대통령실·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18] 한겨레신문(2011), 8천개 협동조합 유기적 협력...해고사태 없이 금융위기 극복.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85645.html#csidx880f678d70cf297b1973c09ec27765b

[19] 유홍규(2013), 지자체 연합 공무원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정책연수.

[20] 정원각(2009), 한국 생협운동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아이쿱생협연구소.

[21] 김정래(2011), 볼로냐의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www.wonjuand.com)의 사회적기업 자료집.

[22] 김경인(2016). 민간무형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성 연구 : 국내 민간발레협동조합 사례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3] 권영근(2009), 협동조합과 협동적 지역사회 만들기, 농민과 사회, 50,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성 연 옥 (Seong, Yeon-Ok)



- 경상대학교 경영학 박사
- 현재 : 공주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인사 및 조직, 조직행동, 조직문화, 리더십, 역량강화 등
- E-Mail : rainbow@gnu.ac.kr

배 성 필 (Bae, Sung-Pil)



- 공주대학교, 경영학박사
- 1999년 ~ 현재 : 예산농산(주) 전무이사
- 2018년 ~ 현재 : 순천향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강사
- 관심분야 : 인사 및 조직, 조직심리, 조직문화, 리더십 등
- E-Mail : angdre100@naver.com